

창원지방법원 2020. 11. 19 선고 2020가단7746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20. 11. 5.

판결 선고 2020. 11. 1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3,17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. 3. 6.부터 2010. 7. 20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다만, '채권자'는 '원고'로 '채무자'는 '피고'로 본다).

2. 근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구지인

별지